멕시코 헌법 제2조 개정에 관한 논의:
멕시코에서 지향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 석사 과정 김민주

게레로주에 거주하는 아프로멕시칸 여인의 모습[1)]

1. 서론

'멕시코'라는 국가에 대해 떠올리면 어떤 인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멕시코에서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던 아즈텍, 마야 후손인 키가 작고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원주민들? 아니면 오랫동안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섞인 혼혈, 더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후손 메스티소(Mestizo)?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멕시코' 사람은 대부분 메스티소일 것이며, 영상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혹은 실제로 멕시코를 여행할 때 쉽게 마주치는 사람들도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아즈텍, 마야의 후손인 원주민들이 살고

1) 출처: 멕시코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b.mx/cultura/articulos/los-pueblos-afromexicanos-y-el-reconocimiento-de-su-diversidad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멕시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멕시코에 흑인이 살고 있다면? 이들은 아프리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스페인어를 쓰고 멕시코 문화를 따르며 살고 있는 멕시코 국적의 국민이라면? 최근 멕시코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아프로멕시칸(Afromexicanos),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 후손 멕시코인들이다. 실제로 멕시코 사회에서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으며,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알기는 더욱 더 쉽지 않다. 이들은 오랜 시간 멕시코 사회의 그늘 속에 살아 왔으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다른 원주민 공동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프로멕시칸들은 멕시코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헌법에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멕시코 내에서 과연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2. 본론

(1) 아프로멕시칸의 기원과 현실

마누엘 데 라 세르다 이 에레라(Manuel de la Cerda y Herrera)의 연구에 따르면 1570년과 1640년 사이에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2]가 베라크루즈 항구를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약 250,000-300,000명의 흑인 노예를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왔다고 한다. 또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1565년부터 1815년까지 멕시코 아카풀코와 필리핀 사이의 무역을 담당했던 무역선인 중국선(Nao de China)에 의

2) 1519년 4월 22일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가 멕시코 코스타 베르데(Costa Verde)에 도착하였고, 1521년 아즈테카(Azteca) 왕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Tenochtitlán)이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손에 무너진 후, 라틴아메리카 스페인 왕국의 허가 아래 이곳에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비레이(Virrey) 통치령이 건국되었다. 통치령이 건국되면서 스페인 사람들은 작은 왕국의 건설을 위해 당시 이곳에 살던 원주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와 노예로 삼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 또 다른 흑인 공동체가 멕시코에 도착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나 버지니아주에서 노예제를 피해 멕시코로 도망 온 흑인들도 멕시코 북부에 정착했다고 한다. 다양한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멕시코에 이민 온 흑인들, 이들이 현재 아프로멕시칸의 조상이자 기원이다.

멕시코가 2018년 원주민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개정할 당시, 아프로멕시칸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1,381,853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멕시코주(Estado de México), 베라크루즈주(Veracruz), 게레로주(Guerrero), 오아하카주(Oaxaca),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누에보레온주(Nuevo León), 할리스코주(Jalisco)에 거주하고 있었다. 멕시코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과 국가 차별 방지 위원회(Consejo Nacional para Prevenir la Discriminación)에 따르면 멕시코주에 204,274명, 베라크루즈주에 266,163명, 게레로주에 229,514명, 오아하카주에 196,213명, 멕시코시티에 160,353명, 누에보레온주에 76,241명, 할리스코주에 61,140명의 아프로멕시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의 원주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멕시코 내에서 매우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고학력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1차 산업인 농축수산물 생산이나 전통 수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 교육, 보건, 행정 등 공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국가 공공 서비스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이들은 최극빈층에 속하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의 가장 취약한 권리는 교육권인데, 15세 이상 아프로멕시칸 인구 중 15.7%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며, 중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로멕시칸 중 36.9%는 동일 나이대 멕시코 국민이 받는 교육수준과 비교해 매우 뒤쳐져있는 상태이며, 멕시코 통계청은 실제 본인의 나이에 받아야 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아프로멕시칸 전체 인구의 56%나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는 아프리카 선조를 가졌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과 소외로 인해 본인이 아프로멕시칸이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본인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아프로멕시칸 공동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의 다른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들과 비교해 사회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빈도가 적고, 본인들의 조상이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같은 소수 그룹이면서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훨씬 심하며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적다. 멕시코 원주민들과는 다르게[3] 이들은 실질적으로 소수 민족, 소수 인종, 소수 그룹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예로 멕시코 헌법 제2조에서 원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2001년에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노예 출신 이방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여전히 멕시코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2) 헌법 제2조, 멕시코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다

2001년 개정된 멕시코 헌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하나이고, 불가분하다. 멕시코는 식민지 이전부터 이 영토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기반한 다문화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은 자신들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기관들 혹은 그 일부를 보존할 수 있다. 원주민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원주민’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원주민 구성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단위를 형성한 집단으로, 한 관할 구역에 정착해야하

3) 멕시코에서 ‘원주민’이라는 개념은 다소 불분명하고 정확히 지칭하는 대상이 없는데, 이는 백인이나 메스티소 혼혈이 아닌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그 인종적 특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머리가 검고, 피부가 상대적으로 갈색이며 키가 작음), 이 기준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에 거주하는 메노니타스(Menonitas) 종족의 경우, 캐나다 이민자들 출신으로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멕시코 내에 11개의 원주민 언어를 바탕으로 총 364개의 원주민 방언이 존재하며 68종족의 원주민이 존재하는데, 2001년 헌법개정에서 언급했던 원주민들의 경우 ‘Pueblos originarios del territorio’ 이기 때문에 영토 본래 원주민, 즉 스페인 식민지 이전부터 멕시코 영토에 살던 원주민 종족들을 의미한다.

며, 그들의 풍습에 따른 고유의 권력 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원주민의 자결권은 국가적 통일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른 자치권의 일반적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원주민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인정은 헌법과 연방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전 조항에서 규정한 원칙들에 더하여 민족언어학, 물리적 정착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한다.[4)]"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대상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본인이 원주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구역 내에 정착해 자신들의 풍습과 문화에 기초한 공동체를 형성한 집단이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멕시코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주민 공동체는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같은 풍습과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으며, 스스로를 메스티소와는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프로멕시칸 역시 본인들은 메스티소나 다른 원주민들과는 다른 인종 공동체라고 인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A항에서 "이 헌법은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5)]고 명시하며, 원주민 공동체 공존과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조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장한다: 원주민 자치기구 및 공동체 내부 형태의 결정,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개인·인권·인간의 존엄·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부 분쟁 해결 및 규정 정립을 위한 시스템의 적용, 전통적 관습에 따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부 지도자나 대표자 선정, 고유한 언어와 지식, 문화와 정체성 형성 요인 보존 등을 그 세부사항으로 보호한다.

---

4) **Artículo 2.** La Nación Mexicana es única e indivisible. La Nación tiene una composición pluricultural sustentada originalmente en sus pueblos indígenas que son aquellos que descienden de poblaciones que habitaban en el territorio actual del país al iniciarse la colonización y que conservan sus propias instituciones sociales, económicas, culturales y políticas, o parte de ellas. La conciencia de su identidad indígena deberá ser criterio fundamental para determinar a quiénes se aplican las disposiciones sobre pueblos indígenas. Son comunidades integrantes de un pueblo indígena, aquellas que formen una unidad social, económica y cultural, asentadas en un territorio y que reconocen autoridades propias de acuerdo con sus usos y costumbres. El derecho de los pueblos indígenas a la libre determinación se ejercerá en un marco constitucional de autonomía que asegure la unidad nacional. El reconocimiento de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se hará en las constituciones y leyes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las que deberán tomar en cuenta, además de los principios generales establecidos en los párrafos anteriores de este artículo, criterios etnolingüísticos y de asentamiento físico.

5) **Artículo 2. A.** Esta constitución reconoce y garantiza el derecho de los pueblos y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 los pueblos y las comunidades indígenas a la libre determinación y, en consecuencia, a la autonomía para:

같은 조 제B항에서는 “연방정부, 연방기관, 지방행정 기관은 원주민들의 기회의 동등을 제고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보호 및 원주민과 함께 고안하고, 운영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핵심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결정한다.”[6]고 명시하고 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원주민 지역 경제 강화와 삶의 조건 향상,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교육, 알파벳교육 등에 호의적인 교육 단계의 보장과 향상, 보건과 건강 관련 서비스 보장, 공기업, 사기업을 통한 인프라 건설과 주거지 개선, 여성 원주민들의 교육 장려, 건강 보호 지원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제2조의 개정 내용은 멕시코를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규정하며 스페인 식민지 이전부터 멕시코 영토에 살던 원주민들과 그 외의 다른 원주민을 다문화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관습과 문화를 유지하며, 스스로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살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2001년 개정 헌법은 언어, 지식, 교육, 철학, 사상 등 정체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부분들도 헌법에 명시해 단순히 물리적인 것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정신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척되던 원주민을 포용하며, 단순히 이들을 서양 문화권에 편입시키는 통합이 아니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 헌법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 당시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률과 정책들은 식민지 이전부터 멕시코 영토에 살고 있던 아즈텍, 마야 후손인 멕시코 본래 원주민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지고 적용되면서, 노예 출신 이방인인 아프로멕시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멕시칸 헌법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헌법 개정이 적용, 보장되면서 오히려 헌법에 바탕을 둔 역차별

6) Artículo 2. B. La Federación, las entidades federativas y los Municipios, para promover la igualdad de oportunidades de los indígenas y eliminar cualquier práctica discriminatoria, establecerán las instituciones y determinarán las políticas necesarias para garantizar la vigencia de los derechos de los indígenas y el desarrollo integral de sus pueblos y comunidades, las cuales deberán ser diseñadas y operadas conjuntamente con ellos.

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실제로 2001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주 정부 헌법이 다인종, 다문화적 국가로 멕시코를 규정함으로써 아프로멕시칸 공동체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 개정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사회의 그늘이었다.

아프로멕시칸 여성들은 2018년 10월 4일 미주인권위원회(La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본인들이 멕시코에서 아프로멕시칸이라는 소수 인종 및 문화 그룹으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그리고 아프로멕시칸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일반적,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를 멕시코 원주민 공동체와 같은 소수 그룹으로 인정하고, 피부색, 출신, 자신들의 선조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멕시칸으로 대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이들의 발언은 헌법이 다문화, 다인종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한 것과는 상관없이, 아프로멕시칸들이 자신의 조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18년 다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2조 제C항[7]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원주민과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를 인정하며, 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명명하든 다문화 구성원의 일부분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이전 항에서 언급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는 이들의 자결권, 자치권, 발전, 사회 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아프로멕시칸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면서 아프로멕시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2018년 헌법 개정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헌법 제 2조가 적용되었다.

---

7) Artículo 2. C. Esta Constitución reconoce a los pueblos y comunidades afromexicanas, cualquiera que sea su autodenominación, como parte de la composición pluricultural de la Nación. Tendrán en lo conducente los derechos señalados en los aprtados anteriores del presente artículo en los términos establezcan las leyes, a fin de garantizar su libre determinación, autonomía, desarrollo e inclusión social.

(3) 헌법 개정에 따른 노력, 아프로멕시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그렇다면 2019년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아프로멕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들을 국가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제2조가 개정된 이후, 멕시코에서 아프로멕시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후속조치로 어떤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어떤 정책이 새로 생겨났으며,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페드로 세르히오 페냘로사 페레즈(Pedro Sergio Peñaloza Pérez) 하원의원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아프로멕시칸 공동체가 있는 게레로주 쿠아히니쿠일라파(Cuajinicuilapa) 시의 아프리칸 후손 출신 페드로 의원은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게레로주의 흑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발되었다. 여당인 모레나(Morena) 정당의 비례대표로, 소수집단 우대정책(Acción afirmativa)을 통해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지난 20년간 아프로멕시칸 문화를 알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활동가로 일해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멕시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하지만 2019년 헌법 개정 이후 아프로멕시칸들의 이슈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여당 하원의원 이란 산티아고 마누엘(Iran Santiago Manuel)은 아프로멕시칸이 많이 살고 있는 오아하카주를 대표하는 의원 중 한 명으로 본인은 메스티소지만,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를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반의회조직법(La Ley Orgánica del Congreso General) 제39조에서는 멕시코 내 의회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 중 하나로 국가 원주민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회조직법 제43조[8]에서는 모든 국가 공공 위원회 혹은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은 하원에서 대표하는 국민의 다양성을 고려해 구성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란 산티아고 마누

8) **Artículo 43. 3.** Para la integración de las comisiones, la Junta de Coordinación Política tomará en cuenta la pluralidad representada en la Cámara y formulará las propuestas correspondientes, garantizando que los Grupos Parlamentarios no pierden la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expresada en el Pleno en la conformación de las comisiones.

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하나는 ‘국가 원주민 위원회(La Comisión de Pueblos Indígenas)’ 명칭을 ‘국가 원주민과 아프로멕시칸 위원회(La Comisión de Pueblos Indígenas y Afromexicanos)’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아프로멕시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원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에서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기관 내 아프로멕시칸 직원이나 대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그는 헌법에서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를 인정하고 국가의 다인종, 다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위원회 이름을 ‘원주민과 아프로멕시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 하원의원의 활동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로멕시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현실을 깨닫고, 똑같은 멕시코 국민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장치나 법률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계획해 실행 중인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9-2024)에 아프로멕시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헌법적 기준과 법제를 만들어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우선순위 계획들에 밀려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문제를 우선시하여 강력하게 진행하거나 대변해줄 집단이나 대표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크고 작은 변화들은 앞으로 멕시코 사회 내에서 같은 멕시코인들이 아프로멕시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주류 인종인지, 선조들이 어떤 지위로 어떻게 멕시코에 왔는지와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에 통합하

는 것이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한다. 아프로멕시칸은 원래 멕시코 영토에 살던 원주민은 아니지만, 500년 전 스페인의 멕시코 침략과 함께 이 땅에 끌려온 이주민이고 이미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권리와 자유가 없이 극빈곤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가?' 하는 물음말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슬람 난민들을 한국에 받아들인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한국은 흔히 말하는 '단일민족' 국가로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인이 아닌 타인종이나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대'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세계 각국으로 나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며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반대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멕시코에 살면서 본 멕시코 사회 역시 인종이나 문화에 따른 차별이 매우 심하고 특히 피부색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지위나 권리가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바 있다. 단순히 피부색이 남들보다 어둡다는 이유로 혹은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나 인권이 너무나 쉽게 침해되고, 똑같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보고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정체성이나 문화는 분명 쉽게 바뀌지 않으며, 어떤 것이 우월하고 열등한지를 구분할 수 없다. 또한 한 개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인간을 도구화하거나 똑같은 인간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보고 강제로 다루려고 할 때,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충돌할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과연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며, 언제 어디

서든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올바른 규칙을 정할 필요도 생기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다인종, 다문화, 소수그룹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는 피할 수 있거나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